

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
(주택도시기금)

2018. 1.

국 토 교 통 부

사 업 명
정부출자수입

< 주택도시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정부출자수입	123,926	71,156	71,156	174,399		103,243

가. 법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10호

제5조 (기금의 재원 등)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0. 주택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

나. 수입 개요

- '07년부터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주택도시기금으로의 전입금을 통한 LH 출자금에 따른 지분과 주택도시보증공사·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익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'13	'14	'15	'16	'17
수납액	59,367	44,936	69,452	123,926	325,587

사 업 명
기타민간이자수입(주택계정)

< 주택도시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기타민간이자수입	2,328,359	2,853,700	2,853,700	2,693,100		△160,600

가. 법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

제5조 (기금의 재원 등)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9. 주택계정의 회수금·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

나. 수입 개요

- 국민주택건설을 위해 지원된 대출금,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 수요자에게 지원된 대출금의 이자수입 및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'13	'14	'15	'16	'17
수납액	2,842,243	2,681,565	2,447,101	2,328,359	2,262,216

사 업 명
법정부담금

< 주택도시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법정부담금	-	1,053	1,053	45		△1,008

가. 법적 근거

-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

제4조(징수금의 배분)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50이,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도에 100분의 20이, 해당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에 100분의 50이, 해당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100분의 30이 각각 귀속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(이하 "주택도시기금"이라 한다)의 재원으로 귀속된다.

나. 수입 개요

- '06.9월부터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
- 재건축부담금 = {종료시점 주택가액 - (개시시점 주택가액+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+개발비용)} × 부과율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'13	'14	'15	'16	'17
수납액	5	45	-	-	-

사 업 명
기타경상이전수입

< 주택도시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기타경상이전수입	41,846	5,000	5,000	41,846		36,846

가. 법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,2항

제5조 (기금의 재원 등)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9. 주택계정의 회수금·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
제31조(보조금의 반환)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 다만,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수입 개요

- 전년도 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(다가구매입임대출자, 전세임대경상보조 등) 정산에 따른 반납액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'13	'14	'15	'16	'17
수납액	7,480	65,764	46,315	41,846	52,930

사 업 명
기타잡수입

< 주택도시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기타잡수입	65,661	50,000	50,000	53,540		3,540

가. 법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

제5조 (기금의 재원 등)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9. 주택계정의 회수금·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

나. 수입 개요

- 기타 영업외수입(시효완성채권, 미수채권이자 등), 공탁금, 수입제세 등 기타 수입
계정에 속하지 않는 잡수입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'13	'14	'15	'16	'17
수납액	99,505	52,608	11,107	65,661	67,725

사 업 명
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

< 주택도시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기타민간 융자원금회수	13,391,433	13,615,746	13,615,746	13,615,700		△46

가. 법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

제5조 (기금의 재원 등)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9. 주택계정의 회수금·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

나. 수입 개요

- 대출 후 약정에 따라 원금전액 또는 할부금을 회수함으로써 조성되는 자금
- 상환방법
 - 정기상환 : 매월 약정납입일에 할부금(원금+이자)을 상환
 - 일시상환 : 만기일전에 매월 약정 납입일에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일에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‘13	‘14	‘15	‘16	‘17
수납액	12,383,494	13,514,761	13,814,135	13,391,433	10,382,388

사 업 명
국공채수입

< 주택도시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수정	본예산(B)	최종	
국공채수입	15,930,747	15,000,000	15,000,000	15,000,000		-

가. 법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1호

제5조 (기금의 재원 등)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

나. 수입 개요

-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이며
 - 제1종 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, 허가, 인가를 받거나 등기·등록을 신청하는 자 등에게 발행하는 채권
 - 제2종 채권은 공공택지내의 85㎡초과 분양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와 현시세와의 차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분양자에게 발행하는 채권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'13	'14	'15	'16	'17
수납액	10,486,966	12,447,436	16,174,115	15,930,747	14,342,052

사 업 명
기타유가증권매각대

< 주택도시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수정	본예산(B)	최종	
기타유가증권 매각대	-	5,000	5,000	-		순감

가. 법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

제5조 (기금의 재원 등)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9. 주택계정의 회수금·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

나. 수입 개요

-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운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(비금융공기업주식, 공채, 정부투자기관주식, 수익증권 등)의 매각수입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'13	'14	'15	'16	'17
수납액	25,391	10	-	-	-

사 업 명
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

< 주택도시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수정	본예산(B)	최종	
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	1,766,021	3,733,330	3,733,330	1,708,328		△2,025,002

가. 법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

제5조 (기금의 재원 등)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9. 주택계정의 회수금·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

나. 수입 개요

- 전년도 조성금액에서 운용금액을 차감한 전년도 이월금으로 통화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'13	'14	'15	'16	'17
수납액	3,860,933	816,730	658,361	1,766,021	916,155

사 업 명
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

< 주택도시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수정	본예산(B)	최종	
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	11,313,059	8,500,000	8,500,000	10,673,432		△2,173,432

가. 법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1호

제5조 (기금의 재원 등)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

나. 수입 개요

- 전년도 조성금액에서 운용금액을 차감한 전년도 이월금으로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투자폴, 랩운용 여유자금 중 당해연도 회수금액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'13	'14	'15	'16	'17
수납액	7,369,604	17,992,330	23,553,239	11,313,059	12,500,857

사 업 명
일반회계 전입금

< 주택도시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수정	본예산(B)	최종	
일반회계 전입금	587,267	717,373	923,819	944,762		227,389

가. 법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4호

제5조 (기금의 재원 등)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4.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

나. 수입 개요

- 장기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자체에 건설비용의 일부를 출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입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'13	'14	'15	'16	'17
수납액	283,728	277,555	709,012	587,267	923,819

사 업 명
기금전입금

< 주택도시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수정	본예산(B)	최종	
기금전입금	567,170	550,361	550,361	550,361		-

가. 법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

제5조 (기금의 재원 등)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3.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
제23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.
1.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
3. 저소득층, 장애인,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피해여성,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

나. 수입 개요

-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총수익금의 100분의 65 해당분 중 일정액을 임대주택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 배분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'13	'14	'15	'16	'17
수납액	538,050	538,045	567,170	567,170	550,361

사 업 명
기금예탁원금회수

< 주택도시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수정	본예산(B)	최종	
기금예탁 원금회수	2,120,136	5,720,350	5,720,350	10,201,724		4,481,374

가. 법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

제5조 (기금의 재원 등)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9. 주택계정의 회수금·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

나. 수입 개요

- 타 기금(공적자금관리기금, 사학진흥기금 등)에 대한 예탁원금 회수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'13	'14	'15	'16	'17
수납액	-	-	-	2,120,136	5,720,350

사 업 명
기금예수금

< 주택도시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수정	본예산(B)	최종	
기금예수금	-	-	-	10,000		순증

가. 법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(자금의 기금 예탁)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

제3조(자금의 기금 예탁)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. 1. 「공무원연금법」에 따라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
--

나. 수입 개요

- 공무원연금기금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의 예탁에 따른 예수금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'13	'14	'15	'16	'17
수납액		-	10,000	-	-

사 업 명
기타민간예수금

< 주택도시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수정	본예산(B)	최종	
기타민간예수금	19,068,526	17,528,120	17,528,120	17,108,500		△419,620

가. 법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2호

제5조 (기금의 재원 등)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2. 「주택법」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
조성된 자금

나. 수입 개요

- 무주택 세대주가 월저축한도액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한 날짜에 납입하는 청약
저축 및 종합저축 납부금 수입액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'13	'14	'15	'16	'17
수납액	14,723,530	16,245,253	21,853,588	19,068,526	18,326,998

사 업 명
기금예탁이자수입

< 주택도시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수정	본예산(B)	최종	
기금예탁 이자수입	94,741	232,553	232,553	262,422		29,869

가. 법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

제5조 (기금의 재원 등)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9. 주택계정의 회수금·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

나. 수입 개요

- 대학연합기숙사 건설을 위해 사학진흥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수입
-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수입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'13	'14	'15	'16	'17
수납액	50	12,038	59,672	94,741	166,663

사 업 명
주택계정전입금(도시계정)

< 주택도시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수정	본예산(B)	최종	
주택계정 전입금	40,100	63,493	101,493	848,165		784,672

가. 법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2항제9호

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9.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

나. 수입 개요

-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사업(출·융자)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주택계정에서 도시계정으로 전입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'13	'14	'15	'16	'17
수납액	-	-	-	40,100	101,493

<주택계정>

사 업 명						
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000	1038	401
명칭	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	재건축초과이익지자체배분	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O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		O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재건축초과이익 자본이전	-	1,030	1,030	1,030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'06.9월부터 주택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이 부담금으로 환수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귀속되는 재원을 지자체에 배분하여 지역간 주거격차 완화 및 주거복지수준 향상 도모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로 귀속되는 50%를 지자체의 주거실태 등을 평가하여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각각 50%씩 지원하는 재원으로 반영(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)

② 추진경위

- '06. 5 :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정
- '12.12 :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개정
 - * '14.12.31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부담금 면제
- '14.12 :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개정
 - * '17.12.31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부담금 면제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'07년~계속
- 사업규모 :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국 광역·기초지자체에 각각 50%씩 지원
- 사업시행방법 : 보조
- 사업시행주체 : 국토교통부
- 사업 수혜자 : 지방자치단체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지자체 보조	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각각 100분의 50을 지원	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

사 업 명						
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000	1039	401
명칭	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	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	주택도시보증공사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O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O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	-	-	-	70,000		순증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정책 보증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자하는 민간자금에 대해 보증 제공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2호, 국유재산법 제60조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'18년
- 사업규모 : '18년 700억원
- 사업시행방법 : 출자
- 사업시행주체 : 국토교통부
- 사업 수혜자 : 주택도시보증공사

사 업 명						
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000	1041	401
명칭	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	주택신보출연	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	○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출연	117,909	114,818	114,818	105,457		△9,361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주택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

② 추진경위 - 사업 시작년도, 추진배경, 부처별 중점과제, 대통령 공약사항 등

- '87. 5. : '87년 5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납입
- '03. 12. :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 공포
- '04. 2. : 한국금융공사법시행령 제정 공포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1987~
- 사업시행방법 : 출연
- 사업시행주체 : 직접 시행
- 사업 수혜자 : 한국주택금융공사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한국주택금융공사	대출평잔× 출연요율	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4조

사 업 명						
이차보전 지원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000	1042	401
명칭	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	이차보전 지원	이차보전 지원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이차보전 지원	79,448	113,105	113,105	104,277		△8,828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재정건전성 도모와 재정지출 확대의 두가지 효과를 위해 기존의 직접융자방식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하여 분양주택과, 주택구입자금(주금공유동화) 등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
- ② 추진경위 : 기금의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2013년부터~
- 사업규모 : '18년 1,043억원
- 사업시행주체 : 직접 시행
- 사업 수혜자 : 분양주택건설사업자 및 주택 구입자

사 업 명						
주택구입·전세자금(융자) (1231-401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200	1231	401
명칭	구입·전세자금	주택구입·전세자금(융자)	주택구입·전세자금(융자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O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			O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주택구입·전세자금(융자)	11,321,593	9,267,400	11,440,900	7,350,000	-	△1,917,400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무주택 서민층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원활한 지원 및 저소득 서민에 대한 전월세자금지원으로 자금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생활 영위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라목

제9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

나.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·임차 또는 개량

라. 준주택의 구입·임차 또는 개량

② 추진경위

<주택구입 자금>

- '94. 4. : 무주택 근로자를 위해 '근로자주택 구입자금' 신설
- '00. 3. : 무주택 서민(근로자 이외의 자)을 위해 '서민주택 구입자금' 신설
- '01. 7. : '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' 신설 (자금부족으로 불연속적으로 운영)
①'01.7~'03.12월, ②'15.11~'06.11월, ③'10.9~'12.7월, ④'13.1~13.11월
- '13. 1. : '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' 이차보전 실행(은행계정으로 집행)
- '13. 9. : '손익/수익공유형 모기지' 신설
- '13. 12. : '손익/수익공유형 모기지' 본사업 실시(12. 9일부터)
- '14. 1. : '내집마련디딤돌 대출' 출시(대출한도 2억원, 금리 연 2.8%~3.6%)
- '14. 3. : 공유형 모기지 요건 완화(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신청대상 확대)
- '15. 12. : '내집마련디딤돌대출' 유한책임제도 도입 및 모기지신용보증 담보 취득
- '16. 1. : '내집마련디딤돌대출' 신흥가구 우대금리 및 대출신청 시기 완화
 - * 신흥가구 우대금리 0.2%p 신설 적용
 - * 신흥가구 대상을 결혼 전 2개월에서 결혼 전 3개월까지로 확대하여 대출신청시기를 완화
- '16. 5. : '내집마련디딤돌대출' 생초자 금리우대 확대(최저 1.6%, 6개월 한시)
- '16. 9. : '내집마련디딤돌대출' 금리인하(2.1~2.9%)
- '17. 1. : '내집마련디딤돌대출' 금리인상(2.25~3.15%)
- '17. 5. : '내집마련디딤돌대출' 주금공 유동화 재원까지 유한책임대출 확대
- '17. 8. : '내집마련디딤돌대출'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
- '17. 12. : '내집마련디딤돌대출' 유한책임대출 소득구간 대상자 확대(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→ 5천만원 이하자)

<전·월세 자금>

- '90. 6. :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'영세민가구 전세자금' 신설
- '94. 4. : 무주택 근로자를 위해 '근로자주택 전세자금' 신설
- '00. 3. : 무주택 서민(근로자 이외의 자)을 위해 '서민주택 전세자금' 신설
- '05. 11. : '영세민가구 전세자금' 금리인하(3→2%) 등 조건 개선
- '07. 11. : '영세민가구 전세자금'의 명칭을 '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'로 변경
- '14. 5. : '근로자·서민전세자금'의 지역별 보증금 한도설정(수도권 3억, 지방 2억)

- '15. 1. : '근로자·서민전세'와 '저소득전세' 대출을 통합, '버팀목 전세자금대출' 출시
'주거안정월세대출' 출시(연 2%, 3년간 720만원 한도)
- '15. 4. :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(2.5~3.1%), 신혼가구 소득요건 완화
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인하(연 1.5%) 및 사회초년생 추가 등
- '15. 9. :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도 버팀목 대출 지원 및
LH 임대주택 입주 고령자 계약금 70%도 지원
- '16. 3. : '안심형' 버팀목전세대출 출시
- '16. 5. : 버팀목전세대출 금리인하(2.3~2.9%) 및 대출 한도상향(수도권 최대 1.4억) 등
- '16. 8. : '주거안정월세대출' 조건 개선(일반형 도입, 대출기간 연장, 취급기관 확대 등)
- '17. 1. :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확대(0.5 → 0.7%p)
- '17. 1. :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채권양도 협약기관(공공임대리츠 1~6호) 확대
- '17. 2. :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중도금 대출 허용
- '17. 6. :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도입
- '17. 12. :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채권양도 협약기관(경기도시공사) 확대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(구입자금) 1994~, (전세자금) 1990~
- 사업규모 : '15년 108,750억원, '16년 113,216억원
- 사업시행방법 : 용자
- 사업시행주체 : 국토교통부 직접시행
- 사업 수혜자 : 소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서민

구 분	주택구입자금대출 (디딤돌대출 등)	전세대출 (버팀목대출)	주거안정 월세대출
지원 조건	(한도) 호당 2억원 (이율) 2.25~3.15% (상환기간) 10,15,20,30년	(한도) 전세보증금의 70% (이율) 2.3%~2.9% (상환기간) 최장 10년	(한도)월 30만원, 총 720만원 (이율) 우대형 1.5%, 일반형 2.5% (상환기간) 만기상환
지원 대상	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(생애최초자는 7천만원) 이하 무주택자	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(신혼부부 등은 6천만원) 이하 무주택자	(우대형) 취업준비생, 사회 초년생, 근로장녀금 수급자 등 (일반형) 부부합산 소득 5 천만원 이하

사 업 명						
분양주택(융자)(1134-401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공공주택추진단	주택계정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4	401
명칭	분양주택등지원	분양주택지원(융자)	분양주택(융자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			○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분양주택(융자)	521,110	382,778	382,778	333,923	-	△48,855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

-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및 제3조

② 추진경위

- '83.06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건설지원을 위해 공공분양자금 신설
- '08.0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
(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(공공분양 70만호) 건설)
- '13.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
(공공주택 연 13만호(임대11만호, 분양2만호) 공급)
*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('13~'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)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('81~현재)
- 사업규모 : '18년 사업승인 1만호
- 사업시행방법 : 용자
- 사업시행주체 :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, 민간사업자
- 사업 수혜자 : 무주택 서민 등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, 민간사업자	호당 55~75백만원	공공주택특별법 제2조, 제3조

사 업 명						
집주인 임대주택사업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1131-402
명칭	분양주택등지원	주거환경개선지원(용자)	집주인 임대주택사업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			○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집주인 임대주택	-	-	-	293,300	-	신규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도시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의 개선을 위한 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지원근거 :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마목

제9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

- 나.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·임차 또는 개량
- 마.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

② 추진경위

▶ 제19대 대통령 정책 공약

- 내 집 없는 서민들이 싸게, 안심하고 거주하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

▶ 주거복지 로드맵

-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통한 공공지원주택 공급(연간 5천호)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'18 ~ 계속
- 사업규모 : 공공지원임대 5,000실
 - (건설개량형) 공공지원임대 1,000실, (매입형) 공공지원임대 1,000실, (융자형) 공공지원임대 3,000실
- 사업시행방법 : 융자
- 사업시행주체 : 주택소유자
- 사업 수혜자 : 주택소유자, 대학생·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

사 업 명						
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(1131-403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403
명칭	분양주택등지원	주거환경개선지원(용자)	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			○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	-	-	12,000	20,000	20,000	8,000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안전위험 주택은 신속한 이주 및 정비가 필요함에도 대부분 주민의 소득수준이 낮아 이주비가 부족하여 원활한 이주가 어려움
-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해 위험 건축물부터 국민을 보호하고, 도심내 노후한 위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주자금 저리 융자지원 추진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: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9조제1항제1호나목

제9조 (기금의 자원 등)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

나.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·임차 또는 개량

② 추진경위

- '17. 7 :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대출 최종 예산 반영(120억원)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'17 ~ 계속
- 사업규모 : 재난안전 위험등급 D, E등급,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안전위험 주택
- 사업시행방법 : 융자
- 사업시행주체 : 안전위험 주택 거주자
- 사업 수혜자 : 안전위험 주택 거주자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안전위험 주택 거주자	금리 1.3%	주택도시기금법제9조제1항 제1호나목

사 업 명						
준주택지원(융자) (1136-401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6	401
명칭	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	준주택지원(융자)	준주택지원(융자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			○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준주택지원(융자)	18,338	7,645	-	59	-	△7,586 (△99.2%)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준주택(오피스텔 등)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, 도심 내 서민과 1~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

제9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1.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
다. 준주택의 건설
라. 준주택의 구입·임차 또는 개량

② 추진경위

- '09. 12 ~ '10. 5 : 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용역 시행
- '10. 4. 5 : 준주택 제도 도입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근거 마련(「주택법」 개정)
- '10. 7. 6 : 준주택의 종류 규정(「주택법 시행령」 개정)
- '12. 7. : 기숙사 건설지원(12.7대책)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 없음
- 사업기간 : '11~계속
- 사업규모 : 해당 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융자
- 사업시행주체 : 직접시행(기금수탁은행)
- 사업 수혜자 : 준주택 건설업자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준주택(오피스텔 등) 건설업자	오피스텔(80만원/㎡) 다중생활시설(40만원/㎡) (연 5.0%, 3년 이내 일시상환)	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9조

사 업 명
국민임대(1332 - 401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공공주택추진단	주택계정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300	1332	401
명칭	임대주택지원(용자)	국민임대주택지원(용자)	국민임대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			○		40%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국민임대	415,720	519,950	519,950	494,248	-	△ 25,702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 (사업승인, 매입)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및 제3조

② 추진경위

- '98.10 국민임대주택 5만호 건설계획 수립
- '03.09 서민·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발표
(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)
- '08.0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
(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(국민임대 40만호) 건설)
- '13.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
(공공주택 연 13만호(국민임대 3.8만호 등 임대11만호, 분양2만호) 공급)
*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('13~'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)
- '13.12 4.1, 8.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
* ('13~'17년간) 행복주택 20 → 14만호, 국민임대 등 6 → 11만호, 민간임대 5→ 6만호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(~현재)
- 사업규모 : '18년 1.9만호 공급(사업승인)
- 사업시행방법 : 용자
- 사업시행주체 :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
- 사업 수혜자 : 소득 4분위 이하의 무주택 저소득계층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	40%	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, 제3조

사 업 명						
공공임대(1333 - 401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공공주택추진단	주택계정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300	1333	401
명칭	임대주택지원(용자)	공공임대주택지원(용자)	공공임대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			○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공공임대	1,777,394	1,800,614	1,800,614	1,711,163	-	△89,451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무주택 서민의 점진적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5,10년·분납임대 및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전세형 주택을 공급(사업승인, 매입)하여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 기회 부여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
-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및 제3조

② 추진경위

- '98.10 국민임대주택 5만호 건설계획 수립
- '03.09 서민·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발표
(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)
- '08.0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
(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(국민임대 40만호) 건설)
- '13.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
(공공주택 연 13만호(국민임대 3.8만호 등 임대11만호, 분양2만호) 공급)
*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('13~'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)
- '13.12 4.1, 8.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
* ('13~'17년간) 행복주택 20 → 14만호, 국민임대 등 6 → 11만호, 민간임대 5→ 6만호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('81~현재)
- 사업규모 : '18년 1.2만호 사업승인
- 사업시행방법 : 용자
- 사업시행주체 :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, 민간사업자
- 사업 수혜자 : 무주택 서민 등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, 민간사업자	호당 55~75백만원	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, 제3조

사 업 명						
행복주택(1335 - 401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공공주택추진단	주택계정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300	1335	401
명칭	임대주택지원(용자)	행복주택(용자)	행복주택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O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				O		40%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행복주택	661,516	1,380,690	1,380,690	1,339,490	-	△41,200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국민의 행복주거 실현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공급(사업승인)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: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및 제3조

② 추진경위

- '13.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
(공공주택 연 13만호(국민임대 3.8만호 등 임대11만호, 분양2만호) 공급)
*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('13~'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)
- '13.12 4.1, 8.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
* ('13~'17년간) 행복주택 20 → 14만호, 국민임대 등 6 → 11만호, 민간임대 5 → 6만호
- '16.04 4.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
* '17년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1만호 확대하여 전체공급 물량을 14만호 → 15만호로 확대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
- 사업규모 : '18년 3.5만호 사업승인
- 사업시행방법 : 용자
- 사업시행주체 :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
- 사업 수혜자 : 대학생·사회초년생·신혼부부 등 젊은층(80%), 고령자 및 주거취약계층 (20%)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	40%	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, 제3조

사 업 명						
다가구매입임대(1336-401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공공주택추진단	주택계정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300	1336	401
명칭	임대주택지원(용자)	다가구매입임대(용자)	다가구매입임대(용자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. 해당사항에 O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				O	50%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다가구매입임대	503,483	572,500	712,975	932,500	-	219,525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*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·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,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

*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%이하인 자, 장애인 등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, 제43조

② 추진경위

- '04. 2 저소득서민층 주거복지 확대방안 발표
 -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
- '05. 4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발표(국정과제회의)
 - 다가구주택 등 매입·공급 확대 : 10,000호 → 50,000호
(연간 4,500호, '15년까지 총 50,000호)
 - 정부지원 확대(재정 45%, 기금 40%)
- '06. 8 부동산정책회의에서 다가구 물량확대
 - 다가구 5만호(연간 6,500호)
- '08. 5 '08년 주택종합계획
 - 기존주택 매입임대 : '08~'12년까지 매년 7,000호씩 공급
- '10. 9 「8·15 경축사 후속조치」 국정과제로 추가
 - 다가구 매입·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 ('연 2만호 수준)
- '11. 1 「1·13 전월세가격 안정화방안」 추진과제
- '12. 5 '12년 주택종합계획
 - 보금자리주택공급시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2만호 공급
- '13. 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
 - '17년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4만호 공급
- '14. 1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
 - '15년 매입·전세임대주택 1만호 추가공급('15년 5만호 공급)
- '15. 9 : 서민·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
 - '16년 리모델링 매입임대 2천호(기존물량전환 1천호, 순증 1천호) 공급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('04~현재)
- 사업규모 : '18년 16,000호 공급(매입)
- 사업시행방법 : 출자, 지사체보조 등
- 사업시행주체 :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사체(지방공사)
- 사업 수혜자 : 기초생활수급자, 쪽방 거주자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 및 주거취약 계층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지사체	융자 50%	'05.4.27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(제59회 국정과제회의)

사 업 명						
전세임대(용자)(1377-401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1	080	088
명칭				주택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300	1377	401
명칭	임대주택지원(용자)	전세임대(용자)	전세임대(용자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				○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전세임대(용자)	-	-	-	3,301,000	-	3,301,000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저소득계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라목

제9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

나.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·임차 또는 개량

라. 준주택의 구입·임차 또는 개량

② 추진경위

- '04. 9 :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제도 도입·시행
- '05. 4 :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발표(국정과제회의),
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 도입
- '06. 8 :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전세임대 물량확대
전세임대 40,300호(연간 5,800호)
- '08. 5 : '08년 주택종합계획
기존주택 전세임대 : '08~'12년까지 총 46,800호 공급
- '10. 9 : 「8·15 경축사 후속조치」 국정과제로 추가
다가구 매입·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
('10년~'12년까지 연 2만호 수준으로 공급)
- '11. 1 : 「1·13 전월세가격 안정화방안」 추진과제
- '12. 5 : '12년 주택종합계획
보금자리주택 공급시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2만호 공급
- '13. 4 :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
'17년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4만호 공급
- '14. 10 :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
'15년 매입·전세임대주택 1만호 추가공급('15년 5만호 공급)
- '15. 9 :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
'16년 전세임대주택 물량확대 공급(고령층 신설 2천호, 대학생 확대 2천호) ('16년 2.7만호 → 3.1만호)
- '16. 4 : 전세임대 1만호 확대(3.1만 → 4.1만호) 및 지원단가 호당 500만원 상향 발표
- '17. 4 : 전세임대 7천호 확대 공급(2.7만 → 3.4만호)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('05~현재)
- 사업규모 : '18년 4만호 공급(계약)
- 사업시행방법 : 융자
- 사업시행주체 :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
- 사업 수혜자 : (1순위)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정, (2순위) 도시근로자 전국평균 소득 50% 이하, 장애인
- 지원 비율 : 호당 68백만원 (* 수도권 85, 광역시 65, 기타 55)

사 업 명						
민간임대(용자) (1333-404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300	1333	404
명칭	임대주택지원(용자)	공공임대주택지원(용자)	민간임대(용자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				○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민간임대(용자)	416,474	927,472	1,104,472	1,084,232		16.9%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용자 지원

⇒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물량 매년 4만호 중 3만호를 민간임대로 공급(대통령 공약, '17.5)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주택도시보증법제9조제1항제2호,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
- ② 추진경위
 - 추진방안 발표(경제혁신 3개년 계획,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, '14.2.26)
 - 투자설명회 개최('14.3.13) 및 공동투자협약 체결 ('14.4.11)
 - * (협약규모) 40개 기관, 14.1조원 규모
 - 주택기금의 리츠 출자근거 마련 (주택법개정, '14.5.21)
 - '14년 임대주택 리츠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('14.6.17)
 - 임대주택 리츠 업무 전담기관(대주보) 위수탁 계약 체결 ('14.6.30)
 - 공공임대리츠 공급규모 5만호→6만호 확대(서민주거비부담 완화방안, '14.10.30)
 -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계획 발표(뉴스테이정책, '15.1.13)
 - '17년까지 뉴스테이 13만호 부지 확보(업무보고 '16.1.14)
 - * 부지확보 : (16년) 5만호, (17년) 5.6만호
 - '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로 부지 확보 증가(주거비 경감방안, '16.4.28)
 - * 부지확보(변경) : (16년) 5.5만호, (17년) 7.1만호
 -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4만호(대통령 공약, '17.5) 중 민간임대 방식으로 3만호 공급(주거복지 로드맵, '17.11.29)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
- 사업기간 : '16~
- 사업규모 :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공급물량 4만호 중 3만호를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며, 이중 매년 착공 예정물량에 대해 융자 지원
- 사업시행방법 : 융자
- 사업시행주체 : 민간사업자
- 사업 수혜자 : 서민·중산층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민간사업자 (부동산투자회사)	호당 평균 91백만원	주택도시보증법제9조제1항제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

사 업 명						
다가구매입임대출자(1440-402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공공주택추진단	주택계정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400	1440	402
명칭	임대주택지원(출자)	임대주택지원	다가구매입임대출자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. 해당사항에 O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O		O		45~50%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다가구매입임대출자	459,903	525,250	651,677	850,250	-	198,573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*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·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,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

*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%이하인 자, 장애인 등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, 제43조

② 추진경위

- '04. 2 저소득서민층 주거복지 확대방안 발표
 -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
- '05. 4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발표(국정과제회의)
 - 다가구주택 등 매입·공급 확대 : 10,000호 → 50,000호
(연간 4,500호, '15년까지 총 50,000호)
 - 정부지원 확대(재정 45%, 기금 40%)
- '06. 8 부동산정책회의에서 다가구 물량확대
 - 다가구 5만호(연간 6,500호)
- '08. 5 '08년 주택종합계획
 - 기존주택 매입임대 : '08~'12년까지 매년 7,000호씩 공급
- '10. 9 「8·15 경축사 후속조치」 국정과제로 추가
 - 다가구 매입·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 ('연 2만호 수준)
- '11. 1 「1·13 전월세가격 안정화방안」 추진과제
- '12. 5 '12년 주택종합계획
 - 보금자리주택공급시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2만호 공급
- '13. 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
 - '17년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4만호 공급
- '14. 1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
 - '15년 매입·전세임대주택 1만호 추가공급('15년 5만호 공급)
- '15. 9 : 서민·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
 - '16년 리모델링 매입임대 2천호(기존물량전환 1천호, 순증 1천호) 공급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('04~현재)
- 사업규모 : '18년 16,000호 공급(매입)
- 사업시행방법 : 출자, 지자체보조 등
- 사업시행주체 :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
- 사업 수혜자 : 기초생활수급자, 쪽방 거주자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 및 주거취약계층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지자체 보조	45~50%	'05.4.27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(제59회 국정과제회의)

사 업 명
전세임대경상보조(1440-403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공공주택추진단	주택계정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400	1440	403
명칭	임대주택지원(출자)	임대주택지원	전세임대경상보조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		○		100%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전세임대경상보조	67,894	60,700	71,206	67,894	-	△3,312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가능토록 사업시행자(LH 및 지자체)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사업의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, 계약직 등 인건비, 도배 등 지원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「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」('04.7.1 국정과제회의)
-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('05.4.27 국정과제회의)
 - '05년 500호 시범사업 추진 후, '06년부터 매년 1천호씩 추진
 - 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되, 관리비·수리비 등 사업비의 일부(5% 수준)을 재정에서 지원
- 「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」('05.4.27 제59회 국정과제회의)
- 「선진한국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혁방안」('05.5.21 국조실대책)
- 「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등 지원대책」('07.6.27 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)
- 신혼부부주택 공급지원('08.3.24 국토해양부 VIP 업무보고)
-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,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

② 추진경위

- '04. 9 :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제도 도입·시행
- '05. 4 :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발표(국정과제회의),
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 도입
- '06. 8 :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전세임대 물량확대
전세임대 40,300호(연간 5,800호)
- '08. 5 : '08년 주택종합계획
기존주택 전세임대 : '08~'12년까지 총 46,800호 공급
- '10. 9 : 「8·15 경축사 후속조치」 국정과제로 추가
다가구 매입·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
(‘10년~’12년까지 연 2만호 수준으로 공급)
- '11. 1 : 「1·13 전월세가격 안정화방안」 추진과제
- '12. 5 : '12년 주택종합계획
보금자리주택 공급시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2만호 공급
- '13. 4 :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
'17년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4만호 공급
- '14. 10 :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
'15년 매입·전세임대주택 1만호 추가공급('15년 5만호 공급)
- '15. 9 : 서민·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('16년 2.7만호→3.1만호)
'16년 전세임대주택 물량확대 공급(고령층 신설 2천호, 대학생 확대 2천호)
- '16. 4 :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('16년 3.1만호→4.1만호)
'16년 전세임대주택 1만호 확대 공급(5천호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지원)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('05~현재)
- 사업규모 : 전세임대사업에 대한 경상비 지원
- 사업시행방법 : 보조
- 사업시행주체 :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
- 사업 수혜자 : 기초생활수급자, 쪽방 거주자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 및 주거취약계층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 보조	100	'05.4.27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(제59회 국정과제회의)

사 업 명
국민임대출자(1440 - 404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공공주택추진단	주택계정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400	1440	404
명칭	임대주택지원(출자)	임대주택지원	국민임대출자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. 해당사항에 O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O		O		30%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국민임대출자	237,424	20,389	98,789	125,980	-	27,191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 (사업승인, 매입)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및 제3조
- ② 추진경위
 - '98.10 국민임대주택 5만호 건설계획 수립
 - '03.09 서민·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발표
(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)
 - '08.0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
(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(국민임대 40만호) 건설)
 - '13.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
(공공주택 연 13만호(국민임대 3.8만호 등 임대11만호, 분양2만호) 공급)
*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('13~'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)
 - '13.12 4.1, 8.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
* ('13~'17년간) 행복주택 20 → 14만호, 국민임대 등 6 → 11만호, 민간임대 5→ 6만호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(~현재)
- 사업규모 : '18년 1.9만호 공급(사업승인)
- 사업시행방법 : 출자 및 보조
- 사업시행주체 :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
- 사업 수혜자 : 소득 4분위 이하의 무주택 저소득계층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 보조	30%	공공주택특별법 제2조, 제3조

사 업 명
영구임대출자(1440-407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공공주택추진단	주택계정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400	1440	407
명칭	임대주택지원(출자)	임대주택지원	영구임대출자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O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O		O		85%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영구임대출자	83,663	44,471	67,971	64,458	-	△3,513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 (사업승인)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: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및 제3조

② 추진경위

- '98.10 국민임대주택 5만호 건설계획 수립
- '03.09 서민·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발표
(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)
- '08.0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
(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(국민임대 40만호) 건설)
- '13.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
(공공주택 연 13만호(국민임대 3.8만호 등 임대11만호, 분양2만호) 공급)
*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('13~'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)
- '13.12 4.1, 8.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
* ('13~'17년간) 행복주택 20 → 14만호, 국민임대 등 6 → 11만호, 민간임대 5→ 6만호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
- 사업규모 : '18년 0.5만호 사업승인
- 사업시행방법 : 출자 및 보조
- 사업시행주체 :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
- 사업 수혜자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정, 국가유공자 등의 최저소득계층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 보조	85%	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, 제3조

사 업 명						
행복주택출자(1440 - 408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공공주택추진단	주택계정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400	1440	408
명칭	임대주택지원(출자)	임대주택지원	행복주택출자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. 해당사항에 O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O		O		30%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행복주택출자	659,335	1,126,339	1,126,339	1,004,593	-	△121,746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국민의 행복주거 실현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공급(사업승인)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: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및 제3조

② 추진경위

- '13.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
(공공주택 연 13만호(국민임대 3.8만호 등 임대11만호, 분양2만호) 공급)
*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('13~'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)
- '13.12 4.1, 8.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
* ('13~'17년간) 행복주택 20 → 14만호, 국민임대 등 6 → 11만호, 민간임대 5→ 6만호
- '16.04 4.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
* '17년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1만호 확대하여 전체공급 물량을 14만호 → 15만호로 확대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
- 사업규모 : '18년 3.5만호 사업승인
- 사업시행방법 : 출자 및 보조
- 사업시행주체 :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
- 사업 수혜자 : 대학생·사회초년생·신혼부부 등 젊은층(80%), 고령자 및 주거취약계층 (20%)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 보조	30%	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, 제3조

사 업 명						
임대주택리츠 출자 (1440-409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400	1440	409
명칭	임대주택지원(출자)	임대주택지원	임대주택리츠출자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○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임대주택리츠출자	1,145,695	1,664,080	1,084,080	1,196,800		△28.1%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○ 민간과 공공이 공동투자한 리츠를 활용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마련하여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

- (공공임대리츠) 부채누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LH의 10년 공공임대에 대해 리츠방식으로 공급확대 도모

- (민간임대리츠) 민간과 공공임대리츠에 공동으로 출자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

⇒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

주택 공급물량 매년 4만호 중 3만호를 민간임대로 공급(대통령 공약, '17.5)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주택도시보증법제9조제1항제2호,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
- ② 추진경위
 - 추진방안 발표(경제혁신 3개년 계획,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, '14.2.26)
 - 투자설명회 개최('14.3.13) 및 공동투자협약 체결 ('14.4.11)
 - * (협약규모) 40개 기관, 14.1조원 규모
 - 주택기금의 리츠 출자근거 마련 (주택법개정, '14.5.21)
 - '14년 임대주택 리츠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('14.6.17)
 - 임대주택 리츠 업무 전담기관(대주보) 위수탁 계약 체결 ('14.6.30)
 - 공공임대리츠 공급규모 5만호→6만호 확대(서민주거비부담 완화방안, '14.10.30)
 -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계획 발표(뉴스테이정책, '15.1.13)
 - '17년까지 뉴스테이 13만호 부지 확보(업무보고 '16.1.14)
 - * 부지확보 : (16년) 5만호, (17년) 5.6만호
 - '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로 부지 확보 증가(주거비 경감방안, '16.4.28)
 - * 부지확보(변경) : (16년) 5.5만호, (17년) 7.1만호
 -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4만호(대통령 공약, '17.5) 중 민간임대 방식으로 3만호 공급(주거복지 로드맵, '17.11.29)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
- 사업기간 : '14~
- 사업규모 : '18년 공공임대리츠 0.7만호, 민간임대리츠 3.0만호
- 사업시행방법 : 출자
- 사업시행주체 : 공공(LH), 민간사업자
- 사업 수혜자 : 서민·중산층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부동산투자회사(출자)	공공임대(8%) 민간임대(10%)	주택도시보증법제9조제1항제2호, 제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

사 업 명						
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000	1071	798
명칭	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	이자상환	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기타민간예수금 이자상환	636,840	634,007	687,107	726,800		92,793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재원을 위해 차입한 청약저축 등에 대한 이자상환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4호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1987~
- 사업규모 : '18년 7,268억원
- 사업시행방법 : 이자상환
- 사업시행주체 : 직접 수행

사 업 명						
국공채이자상환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000	1071	799
명칭	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	이자상환	국공채이자상환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국공채이자상환	1,692,873	1,594,077	1,594,077	1,241,900		△352,177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재원을 위해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이자상환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4호

□ 주요내용

- 사업규모 : '18년 12,419억원
- 사업시행주체 : 직접 시행

사 업 명						
위탁수수료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000	1076	600
명칭	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	수탁은행관리	위탁수수료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위탁수수료	235,925	167,948	258,948	174,078		6,130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 및 수탁은행에 지급하는 관리 경비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
- ② 추진경위
 - '81.07.20 : 평균잔액의 2.2%
 - '84.09.19 : 평균잔액의 2.0~1.7%
 - '86.07.01 : 대출금잔액의 1.5%
 - '89.04.10 : 대출금잔액의 1.17~0.75%
 - '93.01.01 : 계정별 단위업무의 업무량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
 - '03. 2. 1 : 활동기준원가(Active Based Costing : ABC)를 산출하고 이를 정상처리 건수에 곱하여 위탁수수료를 산정
 - '13.04.01 : 주택법 시행규칙 수수료의 50%(단, 사업자대출은 40%) 협약
 - '15.07.01 : 국민주택기금을 '주택도시기금'으로 확대 개편하고,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

□ 주요내용

- 사업규모 : '18년 1,741억원
- 사업시행주체 : 직접 시행
- 사업 수혜자 : 주택도시보증공사, 수탁은행

사 업 명						
기금운영비(주택계정)						

☐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2100	2176	634
명칭	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(기금운영비)	기금운영비	기타경비

☐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기금운영비	594	1,006	1,006	1,001		△5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주택정책·주택금융 및 임대주택 활성화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동 분야의 발전과 제도개선에 기여

2) 사업내용

☐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

☐ 주요내용

- 사업규모 : '18년 1,001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 수행

사 업 명						
주택도시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의 반환금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8900	8910	891
명칭	기금간거래(전출금)	기금전출 (주택도시기금)	주택도시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의 반환금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주택도시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의 반환금	580	916	916	1,015		99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정부내부지출인 복권기금 정산에 따라 연도별 원리금 상환 자금소요 발생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3호

사 업 명						
주택도시기금에서 사학진흥기금으로의 예탁금(9002-900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9000	9002	900
명칭	기금간거래(예탁금)	사학진흥기금예탁 (주택도시기금)	예탁금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			○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추경	본예산(B)	추경	
주택도시기금에서 사학진흥기금으로의 예탁금	56,231	44,239	44,239	215,615		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사립대학교 공공기숙사 및 대학연합기숙사 건설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사학진흥기금에 예탁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제1항제2호

제6조(자금의 기금 예탁) ①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.
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

② 추진경위

- '11.12.7 : 서민주거안정 대책(12.7대책) 발표
- '12. 4. : 물가관계장관회의(사립대학교 공공기숙사 지원)
- '12. 7. : 물가관계장관회의(대학연합기숙사 지원)
- '13.12. : 물가관계차관회의(공공기숙사 지원을 융자→예탁방식으로 변경)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 없음
- 사업기간 : '13 ~ 계속
- 사업시행방법 : 예탁
- 사업시행주체 : 한국사학진흥재단
- 사업 수혜자 : 타 지역출신 대학생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한국사학진흥재단	연 1.5%+가산금리, 3년거치 27년상환	-

사 업 명						
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9000	9003	910
명칭	기금간거래(예탁금)	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	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(총괄계정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으로의 예탁금	6,000,000	8,000,000	8,000,000	8,500,000		500,000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·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,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'14 ~ 계속
- 사업시행방법 : 예탁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공공자금관리기금	3년만기 국고채 금리 수준 1~2년 만기일시상환	-

사 업 명						
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원금상환(융자계정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9100	9110	911
명칭	기금간거래 (예수원금상환)	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원금상환(주택도시기금)	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원금상환(융자계정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으로의 원금상환(융자계정)	122,996	83,429	83,431	50,764		△32,665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정부내부지출인 공자기금(융자) 차입조건에 따라 연도별 원리금상환 자금소요 발생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의해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금 상환

사 업 명						
주택도시기금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의 원금상환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9100	9130	910
명칭	기금간거래 (예수원금상환)	기타기금예수원금상환 (주택도시기금)	주택도시기금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의 원금상환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주택도시기금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의 원금상환	-	-	-	10,000		순증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정부내부지출인 공무원연금기금 차입조건에 따라 원리금상환 자금소요 발생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의해 외부로부터 차입한 예수금의 원금 상환

사 업 명						
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이자상환(융자계정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9200	9201	921
명칭	기금간거래 (예수이자상환)	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 이자상환(주택도시기금)	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이자상환(융자계정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으로의 이자상환(융자계정)	2,878	3,056	3,056	2,051		△1,005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정부내부지출인 공자기금(융자) 차입조건에 따라 연도별 원리금상환 자금소요 발생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의해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상환

사 업 명						
주택도시기금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의 이자상환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9200	9220	920
명칭	기금간거래 (예수이자상환)	기타기금예수이자상환 (주택도시기금)	주택도시기금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의 이자상환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주택도시기금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의 이자상환	-	-	-	441		순증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정부내부지출인 공무원연금기금 차입조건에 따라 원리금상환 자금소요 발생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의해 외부로부터 차입한 예수금의 이자 상환

사 업 명						
주택계정에서 도시계정으로의 전출금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9300	9310	999
명칭	계정간거래 (전출금)	주택계정에서도도시계정으로의 전출금	주택계정에서도도시계정으로의 전출금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주택계정에서 도시계정으로의 전출금	40,100	63,493	101,493	674,865		611,372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계정에서 도시계정으로의 전출금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5호,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

사 업 명						
통화금융기관예치금(주택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9700	9701	971
명칭	여유자금운용	여유자금운용(주택도시기금)	통화금융기관예치금(주택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통화금융기관예치금(주택)	916,155	4,578,520	4,094,418	2,150,000		△2,428,520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자금의 운용은 중장기 투자 전략 수립 후 투자원본의 안정성·유동성 및 수익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통화금융기관, 비통화금융기관 등으로 분산 투자하여 운용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

사 업 명						
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(주택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9700	9701	972
명칭	여유자금운용	여유자금운용(주택도시기금)	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(주택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비통화금융기관예 치금(주택)	15,675,222	11,848,470	9,094,108	14,300,475		2,452,005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자금의 운용은 중장기 투자 전략 수립 후 투자원본의 안정성·유동성 및 수익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통화금융기관, 비통화금융기관 등으로 분산 투자하여 운용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

사 업 명						
기타여유자금운용(주택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9700	9701	973
명칭	여유자금운용	여유자금운용(주택도시기금)	기타여유자금운용(주택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기타여유자금운용 (주택)	11,883	30,000	30,000	30,000	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기타여유자금운용은 공탁금, 특수채권관리 미지급금 및 자산유동화계정 등 지출을 위한 자금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및 제63조에 의해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

사 업 명						
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9800	9850	980
명칭	차입금등원금상환	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(주택도시기금)	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기타민간예수금 원금상환	12,286,087	13,014,700	13,014,700	14,448,800		1,434,100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재원을 위해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금 상환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2호

사 업 명						
국공채원금상환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주택토지실	주택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9800	9860	980
명칭	차입금등원금상환	국공채원금상환 (주택도시기금)	국공채원금상환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국공채원금상환	11,231,532	9,859,200	9,859,200	10,059,700		200,500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재원을 위해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금 상환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4호

<도시계정>

사 업 명
위탁수수료(도시계정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국토도시실	도시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500	1530	600
명칭	도시재생활성화	위탁관리	위탁수수료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위탁수수료 (도시계정)	-	-	-	4,931		4,931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출·융자 등 업무를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하므로 이에 대한 법정 위탁수수료 지급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: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10조(기금의 운용관리 등)

② 추진경위

-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정 : '15. 1월

- 「주택도시기금법」 및 하위법령 시행 : '15. 7월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

- 사업기간 : 해당사항 없음

- 사업규모 : '18년 ~ 계속

- 사업시행방법 : 업무위탁 등

- 사업시행주체 : 국토교통부

- 사업 수혜자 :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민 등
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해당사항 없음		

사 업 명						
기금운영비(도시계정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국토도시실	도시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500	1540	634
명칭	도시재생활성화	기금운영비	기타경비(도시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O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O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기금운영비 (도시계정)	-	40	40	40	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도시계정의 성과 평가와 도시재생정책 연구 등 수행을 위한 용역비용 등
기타 경비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: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10조(기금의 운용관리 등)

② 추진경위

-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정 : '15. 1월

- 「주택도시기금법」 및 하위법령 시행 : '15. 7월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사항 없음

- 사업기간 : '17년 ~ 계속

- 사업규모 : 해당사항 없음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- 사업시행주체 : 국토교통부

- 사업 수혜자 :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민 등
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해당사항 없음		

사 업 명						
도시재생사업지원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국토도시실	도시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500	1510	992
명칭	도시재생활성화	도시재생지원	도시재생사업지원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도시재생사업지원	-	-	-	3,310	-	순증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, 제도개선 방안 관련 연구, 도시재생 추진주체 역량강화 교육, 사회적경제 육성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전국의 쇠퇴도시 활성화 및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(사업근거)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
- (추진경위)
 - 대통령 공약사항 “스마트한 지방도시 재생”
 - '13.6.4일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 · 공포
 - '13.12.4일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 제정 · 공포
 - '14.5.7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지정 및 고시
 - '15.3~4월 2차 도시재생 사업지구 31곳 공고
 - '16.4.18일 2차 도시재생 33곳 대상지역 발표
 - '17.9.24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발표
 - '17.12.14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68곳 대상지역 발표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'14 ~ 계속
- 사업규모 :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비 및 역량강화
- 사업시행주체 : 직접수행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해당사항 없음		

사 업 명						
도시재생지원(융자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국토도시실	도시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500	1510	997
명칭	도시재생활성화	도시재생지원	도시재생지원(융자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			○		총사업비의 20%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도시재생지원 (융자)	2,400	55,048	55,048	74,832	74,832	19,784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쇠퇴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기반 창출을 위하여 도시재생리츠 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: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9조

② 추진경위

-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: '13. 6월
-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('14~'23) 국무회의 의결 : '13. 12월
-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(경제기반형 2개, 근린재생형 11개) : '14. 5월
-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정·시행 : '15. 7월
- 도시재생사업 일반지역 선정(경제기반형 33개) : '16. 4월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사항 없음
- 사업기간 : '16년 ~ 계속
- 사업규모 : '17 ~ '21년 총 22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
(연차별 신규사업 : 2개-5개-5개-5개-5개 계획)
- 사업시행방법 : 용자
- 사업시행주체 : LH 및 지자체(지방공사 포함), 민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
- 사업 수혜자 :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민 등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LH 및 지자체(지방공사 포함), 민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	총사업비의 20% 범위 내	주택도시기금법 제9조

사 업 명						
도시재생지원(출자)(1510-998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국토도시실	도시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500	1510	998
명칭	도시재생활성화	도시재생지원	도시재생지원(출자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○					총사업비의 20%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도시재생지원 (출자)	5,000	10,000	10,000	200,000	200,000	190,000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쇠퇴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기반 창출을 위하여 도시재생리츠 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자 지원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: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9조

② 추진경위

-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: '13. 6월
-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('14~'23) 국무회의 의결 : '13. 12월
-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(경제기반형 2개, 근린재생형 11개) : '14. 5월
-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정·시행 : '15. 7월
- 도시재생사업 일반지역 선정(경제기반형 33개) : '16. 4월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사항 없음
- 사업기간 : '16년 ~ 계속
- 사업규모 : '17년 ~ '21년 총 22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
(연차별 신규사업 : 2개-5개-5개-5개-5개 계획)
- 사업시행방법 : 출자
- 사업시행주체 : LH 및 지자체(지방공사 포함), 민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
- 사업 수혜자 :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민 등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LH 및 지자체(지방공사 포함), 민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	총사업비의 약 18%	주택도시기금법 제9조

사 업 명						
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국토도시실	도시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500	1520	994
명칭	도시재생활성화	도시기능증진지원	수요자중심형재생사업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			○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	-	-	32,000	47,000	-	15,000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쇠퇴한 도시지역 내 일자리 창출,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, 상가 리모델링과 공동주차장 건설, 신규 창업을 위한 창업 시설 등 필요자금 융자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사항 없음
- 사업기간 : '17년 ~ 계속
- 사업시행방법 : 용자
- 사업시행주체 : 지방자치단체, 코워킹커뮤니티 운영사업자(개인, 법인, 사회적 기업 등), 노후 상가 소유자, 주차장 부지 소유자, 신규 창업을 하는 마을기업, 사회적기업, 청년창업자 등 개인 또는 법인
- 사업 수혜자 :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민 등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마을기업, 사회적기업, 지자체, 조합, 지방공사 등 기금 지원대상 개인 및 법인	총사업비의 70% 이내 담보범위 내 (금리 1.5%)	주택도시기금법 제9조

사 업 명						
가로주택정비사업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국토도시실	도시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500	1520	995
명칭	도시재생활성화	도시기능증진지원	가로주택정비사업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			○		사업비의 50%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가로주택정비사업	-	-	7,983	200,000	-	2,505.3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·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구역면적 1만㎡ 미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지자체·주민 주도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,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단기간에 걸친 도시재생활효과의 가시화가 가능
- 또한,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노후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, 기존 대규모 재개발·재건축 사업에서 소외되던 지역의 주택 개량이 가능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'17 ~ 계속
- 사업규모 : 사업별 총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- 사업시행방법 : 용자
- 사업시행주체 : 조합·토지등소유자·LH 등
- 사업 수혜자 : 저층 노후주택 소유자, 무주택 주거취약계층 등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조합·토지등소유자·LH 등	총사업비의 50% 이내 (금리 2% 이내)	주택도시기금법제9조제1항 제1호가목

사 업 명						
자율주택정비사업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국토도시실	도시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500	1520	996
명칭	도시재생활성화	도시기능증진지원	자율주택정비사업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			○		사업비의 50%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자율주택정비사업	-	-	-	150,000	-	순증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사업규모가 작고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,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단기간에 걸친 도시재생활효과 가시화

* 노후·불량 주택의 호수가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미만,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미만인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민 주도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'18 ~ 계속
- 사업규모 : 사업별 총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- 사업시행방법 : 용자
- 사업시행주체 : 토지등소유자·LH 등
- 사업 수혜자 : 저층 노후주택 소유자, 무주택 주거취약계층 등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토지등소유자·LH 등	총사업비의 50% 이내 (금리 2% 이내)	주택도시기금법제9조제1항 제1호가목

사 업 명						
통화금융기관예치금(도시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주택도시기금	국토교통부	국토도시실	도시	080	088
명칭					사회복지	주택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9700	9701	971
명칭	여유자금운용	여유자금운용(주택도시기금)	통화금융기관예치금(도시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최종	본예산(B)	최종	
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	-	-	-	10,000		10,000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통화금융기관 예치금은 '18년도에 조성한 자금을 융자사업, 차입금 상환 등에 운용하고 남은 잉여자금으로 지급준비자금 성격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사항 없음
- 사업기간 : '18년 ~ 계속
- 사업규모 : 해당사항 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토교통부
- 사업 수혜자 : 해당사항 없음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해당사항 없음		